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증서수여)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취소)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증서수여)①명예시민증서는 법표서식에 의하여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증서수여) ①----- ----- -----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부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권리의무) (생략)	제3조(권리의무) (현행과 같음)
제4조 (취소)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취소)----- ----- -----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부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삭제)
제5조(시행규칙) (생략)	제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7월 6일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3년 7월 7일

라. 상정일자 : 93년 7월 21일(제2차 총무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조사과장 심 제 산)

가. 제안이유

- 내부부세제 13415-137('93. 5. 11)호 및 경기세정 13401-823('93. 6. 9)호에 의거 조세준칙 시도.
-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정도에 응분의 예우를 다하고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방세 파세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나. 주요골자

○ 현 황

-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 개 정

-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
의 결	제21회
년 월 일	(93. 7. 23)

발의년월일 : 1993. 7. 6

제 안 자 : 부천시장

1. 제안이유

- 내부부세제 13415-137('93. 5. 11)호 및 경기세정 13401-823('93. 6. 9)호에 의거 조례준칙 시단.
-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적용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정도에 응분의 예우를 다하고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방세 과세면제대상인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제조정.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2. 주요골자

- 현 행
 -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 개 정
 -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인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 ————— ————— ————— ——
제2조(면제대상) ① (생략)	제2조(면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 ————— ————— ————— ————— ————— —————

현행	개정 (안)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등급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에게 제출한다.</u>	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현행]

동조제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2급	14, 79, 98, 99, 102, 104, 105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1항 (복합호수자)	35, 36,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급 2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7, 49, 50,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별표]

[개정안]

동조제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급 수		분 류 번 호
6급 (복합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93년 7월 6일
-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93년 7월 7일
- 라. 상정일자 : 93년 7월 21일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원 태 회)

가. 제안이유

- 조직의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 파소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음.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나. 주요물자

- 정수물품 중점 관리분야
 - 정수대상 물품 : 237개품목
 - 업무용 정수 : 44개 품목
 - 사업용 정수 : 193개 품목
- 승인요청 내역
 - 정수승인 물품 : 3개품목 6개
 - 신 규 취 득 : 3개품목 6개
 - 업무용정수 : 2개품목 4개
 - 사업용정수 : 1개품목 2개